# 농지제도
#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8. 17.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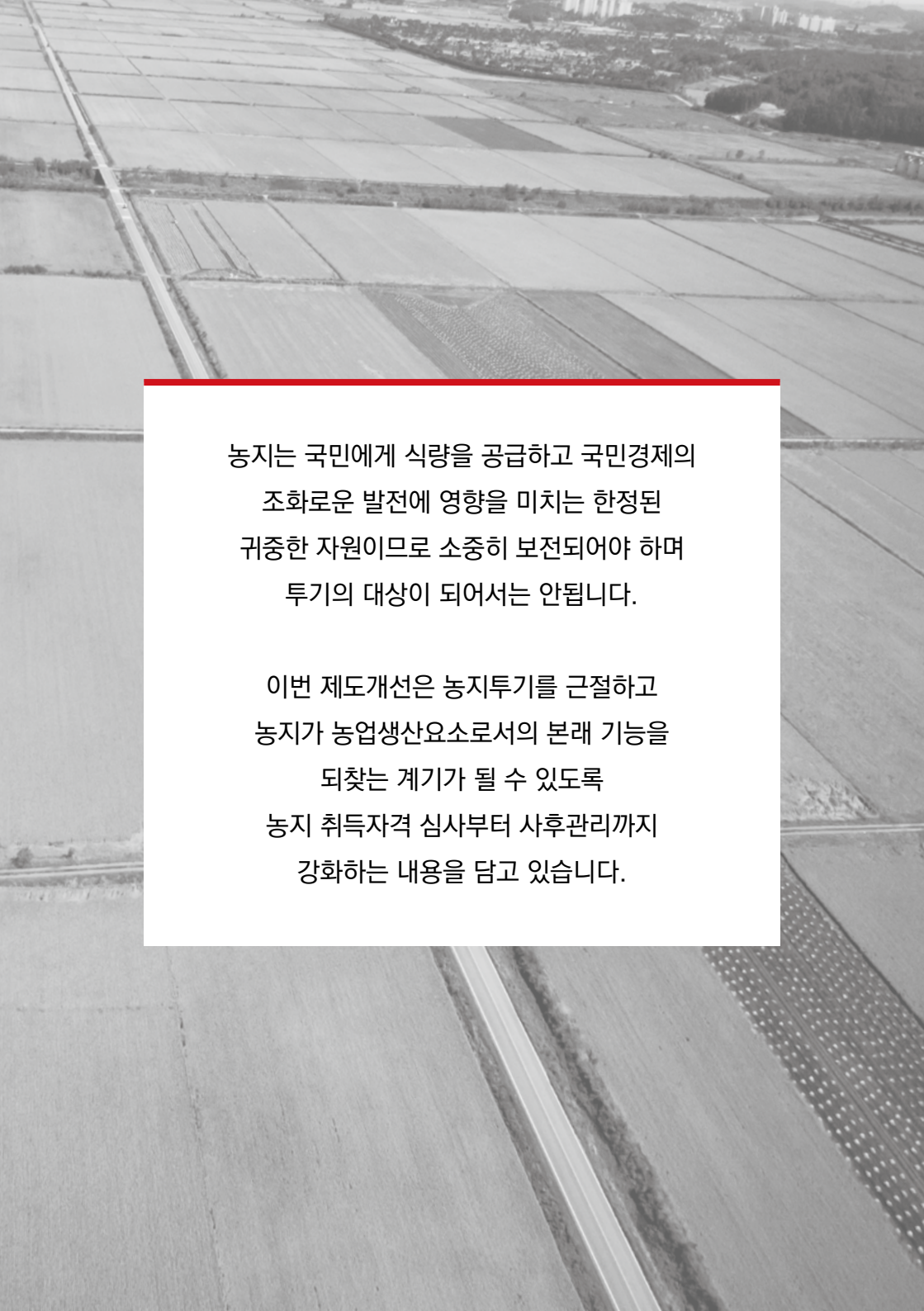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ONTENTS

##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0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02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

03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04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05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06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 심사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07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08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09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10 유휴농지등 조사근거 마련

11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명확화

12 농지관리위원회 신설

## 농지 관련 행정체계를 확충합니다

13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14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및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5 부동산업 금지 및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근거 신설

16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17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18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 0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 | |
|---|---|
| 기존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했음 |
|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됨 |

**주요 내용**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우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Q** 법 시행일 이전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유가 가능합니다.

# 02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

| | |
|---|---|
| 기존 | 관련 규정 없음 |
| 개정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할 경우<br>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03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 |
|---|---|
| 기존 | 농업경영계획서 실현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항목인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증명서류 제출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 개정 |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추가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주요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 농지 취득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증명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만일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제한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04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 구분(취득 목적) | 기존 | 개정 |
|---|---|---|
| 농업경영 목적 | 4일 | 7일 |
| 주말·체험영농 목적 | 2일 | 7일 |
| 농지전용 목적 | 2일 | 4일 |
| 농지위원회 심사대상 | - | 14일 |

**주요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 당초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주말·체험영농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은 7일, 농지전용 목적은 4일로 연장되고,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05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 |
|---|---|
| 기존 |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자수의 제한이 없었음 |
| 개정 | 공유자의 인원수를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지자체 조례로 공유소유자 수를 정한 경우, 그 수를 초과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하며, 증명서류(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 세부적인 증명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명의 자식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소유제한 관련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속취득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06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 | |
|---|---|
| 기존 |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
| 개정 |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마련<br>○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

**주요 내용**

- 농지 취득자격 심사 시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 농지위원회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지제도
##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지 취득이후
#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07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 구분 | 기존 | 개정 |
|---|---|---|
| 불법 농지취득 | 농지 처분의무부과 | 농지 처분명령 |
|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 - | 농지 처분명령 |
| 이행강제금 | (부과대상)<br>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br>(부과기준)<br>토지가액의 20% | (부과대상)<br>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br>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br>(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 |

* (일반적인 농지 강제처분 절차) 농지처분의무 부과 → 농지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주요 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의무기간(1년이내) 없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법 상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 수준도 기준 가격의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 또한, 농지 불법전용자에게 부과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08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 |
|---|---|
| **불법 취득**<br>(벌칙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한 경우 처벌 강화<br>(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br>(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 **불법 조장**<br>(벌칙 신설) |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및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불법 임대**<br>(벌칙 강화) | 불법임대 등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br>(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br>(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내용**

-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 또한, 농지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농지법 위반 중개행위를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됩니다.

- 아울러,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이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09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 | |
|---|---|
| 기존 |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근거 미비 |
| 개정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

**주요 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내 신규 취득 농지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세부적인 조사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실태조사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농막, 불법 성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설치 등도 점검하게 됩니다.

-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되며, 농식품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10 유휴농지등 조사근거 마련

| | |
|---|---|
| 기존 | 유휴농지 등에 대한 조사근거 미비 |
| 개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유휴농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휴농지나 농지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앞으로 조사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유휴농지 조사,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세부적인 조사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11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명확화

| | |
|---|---|
| 기존 |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시 농지 처분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
| 개정 |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

**주요 내용**

-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시 농지 처분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상속인 및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A**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ㅇ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해야 합니다.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동안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12 농지관리위원회 신설

| | |
|---|---|
| 기존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용 심사*를 자문하는 별도의 기구 없음<br>*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만㎡이상 |
| 개정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br>농식품부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였습니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분야 등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전용 신청 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농지전용 규모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지제도
##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지 관련 행정체계를 확충합니다

# 13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 | |
|---|---|
| 기존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농지은행 사업 수행 |
| ▼ | |
| 개정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상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세부적인 조직설립 및 업무범위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농지은행관리원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A** 유휴농지, 농지이용시설 설치 등의 농지 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여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에게 유용한 농지 관련 정보 제공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14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및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 | |
|---|---|
| 기존 | 농지원부 /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 없었음 |
| 개정 | 농지대장으로 개편 /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

**주요 내용**

- 농지 공적장부를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임대차 신고절차 등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농지대장 변경 신고해야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A** 농지법 상 임대차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차는 신고해야합니다.

# 농지제도
##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15 부동산업 금지 및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근거 신설

| | |
|---|---|
| 기존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 없었음 |
| ▼ | |
| 개정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 부과 |

**주요 내용**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 처벌 대상에는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자연인도 포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동산업이란?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등을 말합니다.

# 16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 |
|---|---|
| 기존 | 과징금 부과 근거 없음 |
| 개정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과태료 부과 |

**주요 내용**

- 지자체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벌금 외에도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행위의 경중, 부당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한가요?

**A** 과징금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벌칙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 시 벌금이 부과되고, 발생한 부당이익은 과징금을 통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17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 | |
|---|---|
| 기존 | 3년 주기 실태조사 |
| 개정 | 조사 주기 단축 및 과세자료 등 활용자료 확대 |

**주요 내용**

-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수시조사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해 나갈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농업법인이 영위하지 못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농업경영 ·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의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업은 영위할 수 없습니다.

# 18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 |
|---|---|
| 기존 | 설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사후 통지 |
| 개정 | 설립등기 전 지자체 신고 후 지자체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설립등기 |

**주요 내용**

-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 이전 지자체에 신고하여 사업범위, 설립요건 등의 적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확인 결과 적법할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만 등기 가능하며, 신고확인증과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상기 사전신고 절차는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시에도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법 개정 이전 설립된 법인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정 이전 설립 법인은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 또는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발 행 처** 농림축산식품부
**디 자 인** (유)디자인스토리

이 책의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